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736

발의연월일: 2024. 9. 6.

발 의 자:이수진 · 민병덕 · 이연희

서미화 · 김준혁 · 이원택

송옥주 · 김정호 · 추미애

최기상 · 김태년 · 한정애

한창민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난 2023년 개정(2023.8.16.)을 통해 전기차 보급 현실을 고려하여 자동차등록원부상 의무적 기재사항에 전기차 배터리 식별번호를 포함하도록 규정한 바 있음(2025.2.17. 시행예정).

그런데 최근 발생한 전기차 화재를 계기로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배터리 제조사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가 부각되고 있으나, 배터리 식별번호는 알파뱃과 숫자로 구성되어 소비자가 이를 통해 배터리 제조사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고, 자동차제조업체 등은 영업기밀 등의 사유로 배터리 제조사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자동차등록원부에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를 의무적으로 기재하 도록 하여 전기차 구매 시 소비자 선택을 강화하고, 배터리 제조사 정 보를 활용하여 전기차 화재 원인 규명 및 안전한 전기차 운행환경 조 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6항).

법률 제 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9685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항 전단 중 "구동축전지 식별번호(「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 한정한다)"를 "구동축전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 한정한다) 식별번호 및 제조사"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등록원부 기재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전기자동차에 대하여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법률 제19685호 자동차관리법 법률 제19685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조(자동차등록원부) ① ~ ⑤ 제7조(자동차등록원부) ① ~ ⑤ (생 략) (현행과 같음) ⑥ 등록원부에는 등록번호, 차 대번호, 차명, 사용본거지, 자동 차 소유자, 원동기형식, 구동축 전지 식별번호(「환경친화적 동축전지(「환경친화적 자동차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 전기자동차로 한정한다), 차종, 기자동차로 한정한다) 식별번 호 및 제조사-----용도, 세부유형, 구조장치 변경 사항, 검사유효기간, 자동차저 당권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공시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기 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부 기재사항, 서식 및 기재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